

# 구한말 金斗源의 呈訴활동과 영사재판권의 實例

김건우\*

## 목 차

- I. 머리말
- II.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반향
  - 1. 일본인의 소금 탈취
  - 2. 영사재판권과 呈訴활동
  - 3. 국권회복의 상징
- III. 맺음말

## [국문 요약]

金斗源은 1899년 어느 한 일본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呈訴하였다. 대한제국과 일본 양국의 개인 간에 발생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제국의 외교능력의 부재와 일제의 호혜 원칙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거론하였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고위 관리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일 정서를 訴狀에 드러냈다. 그는 치안방해를 이유로 반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으며, 日本 公使가 타고 있던 인력거를 밀친 죄로 1년 동안 於靑島에 유배형을 받기도 하였다. 김두원 사건은 개인 소

\*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전임강사, kunwoo629@hanmail.net

송에서 시작하였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점차 반사회적 행위로 비추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두원 소송사건은 당시 불평등조약의 하나인 영사재판권 아래 약소국 상인의 실제 사례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는 영사재판권이라는 굴레에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불평등과 제도적 절차의 하자를 제기하는 힘든 주위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곳곳하게 자신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김두원은 20여 년 동안 모순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한·일 관계와 국권이 약화된 국민의 서글픈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상징이 되기까지 하였다.

[주제어] 김두원, 영사재판권, 鹽商, 채무, 外部, 일본공사관, 罷訴

## I. 머리말

개항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일본과 조공 및 교린 무역형태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물적·인적 교류를 맺어왔다. 하지만 개항 이후 본격적인 서구문물 유입과 외국인의 등장은 전통적인 국내 상품유통체계를 재편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특히 조선의 對日 무역은 종래의 무역 형태를 벗어나 급속도로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증대된 通商에 따른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여러 형태의 분쟁을 발생시켰고, 이는 내국인간의 분쟁·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더구나 당시 조선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중국 및 서구 열강과 영사재판권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자국민의 억울한 사정과 그에 따른 요구가 제대로 관철될 수 없었다.<sup>1)</sup> 즉 당시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런저런 자국민의 불만이 표출되었다.<sup>2)</sup>

1) 권한용, 『日帝식민통치기 초기 朝鮮에 있어서의 不平等條約의 國際法の 效力』, 『법사학연구』 제29호(한국법사학회, 2004), 227~231면.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 -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법사학연구』 제32호(한국법사학회, 2005), 208~213면.

한철호,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학보』 제21호(고려사학회, 2005), 193~203면.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金斗源 사건은 1899년 한·일 양국의 상인 간 통상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이 발단이 되어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 넘도록 이어진 소송사건을 말한다. 『外部訴狀』<sup>3)</sup>에는 이와 관련된 30여 건의 청원서가 실려 있고,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반일감정과 섞여 독립신문·황성신문·동아일보·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지상에 연속 보도될 정도로 당시 사회적 반향이 컸다. 그는 20여 년 동안 모訴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한·일 관계와 국권이 약화된 국민의 서글픈 처지를 자각하게 되었다. 또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상징이 되었다.

지금까지 김두원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1962년에 쓰여진 李光淳의 짧은 논문이 1편 정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김두원 사건을 전적으로 일본인들의 침략 행태로 규정하여 서술하였다.<sup>4)</sup> 하지만 外部에 올린 김두원의 訴狀이나 사건 관련 法部の 照會文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몇몇 주요 신문의 기사 내용만을 인용했기에 전체적으로 사건을 조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이광순이 논문 끝부분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라 민족감정의 고취라는 측면이 강하게 기술되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김두원과 관련된 자료를 되도록 망라하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논지 전개를 명확히 하기 위해 訴狀들과 신문의 내용, 각종 기록물을 통해 사건 진행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한 상인이 겪었던 영사재판권 실제 사

2) 이병천, 「한국 개항기의 사회경제구조와 그 변화: 개항기 외국상인의 내지상권 침입-청상(淸商)·일상(日商)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9호(경제사학회, 1985), 330면.

3) 『外部訴狀』(奎 18001)은 1896년(建陽 원년) 1월부터 1906년(광무 10) 12월까지 外部 및 議政府 外事局에 접수된 訴狀 및 請願書를 연도별로 총 9책으로 묶은 것이다. 원문은 ‘訴狀’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데 2000년 영인본으로 출간하면서 法部에서 편철한 『訴狀』(奎 17281)과 구분하기 위하여 『外部訴狀』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外部訴狀』解説 참조) 이하 『外部訴狀』을 인용할 경우 소장을 올린 날짜와 영인본 면수만을 기재한다.

4) 李光淳, 「韓日合併 前後를 通한 日人들의 侵略行態-鹽商 金斗源에 對한 木村乙吉 等の 海賊行爲를 中心으로」, 『韓國思想』 제4집(韓國思想編輯委員會, 1962년 8월), 63~74면.

례를 통해 그 의미를 看取하고자 한다.

## II.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반향

### 1. 일본인의 소금 탈취

함경남도 덕원부 원산항에 거주하던 상인 김두원은 전 재산과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1899년 3월 25일 울산 馬坪의 소금 1,088斗를 사서 長鬐郡 毛浦에 사는 金雙童의 집에 적치해 두었다. 그러던 중 6월 13일 홋카이도(北海島) 시마네현(島根縣) 오키노쿠니(隱岐國)에 거주하고 있던 기무라 겐이치로바(木村源一郎) 형제가 김두원에게 울릉도에 가서 소금을 콩으로 바꾸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선박회사 배편을 이용하라고 요청하였다. 김두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의 선박에 소금을 실었다.

6월 15일 기무라 형제와 함께 소금을 선적한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하였는데 날이 저물어 島監 裴季周의 집에 묵게 되었다.<sup>5)</sup> 그런데 밤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 기무라가 울릉도에 槻木(물푸레나무)을 베려고 와있던 일본인들과 다투는 것이었다. 김두원이 마을 사람에게 연유를 물으니, 몇 년 전 그 일본인들이 封山の 槻木을 베자 기무라가 울릉도 도감 배계주와 함께 일본에 가서 그들이 타국의 나무를 함부로 베는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증인이

5) 조선시대 울릉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空島정책이었다. 그런데 1880년대 조선정부는 東南諸島開拓使兼捕鯨事로 김옥균을 임명하면서부터 울릉도·독도 지역의 개척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94년 12월부터는 울릉도 搜討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전임 島長을 두었다가, 1895년 8월에는 島長을 島監으로 바꾸어 判任官 직급으로 격상하고 초대 島監에 裴季周를 임명했다.(신용하, 『신용하의 독도이야기』, 살림, 2004) 울릉도 초대 島監이 바로 김두원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裴季周이다. 당시 울릉도는 한일의 어업, 임업뿐만 아니라 김두원 사건으로 보았듯이 대한제국과 일본의 중간 교역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로 인하여 불법 벌목했던 일본인들은 모두 잡혀 벌금을 내고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풀려나 다시 울릉도에 와서 槻木을 베다가 기무라의 배가 정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지어 와서 예전의 원한을 풀려고 한 것이다.

김두원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본어도 몰라 沈奇秀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날 밤에 기무라는 구타를 당하여 결국 죽게 되고, 그 아우는 시신을 수습하고 몰래 김두원의 소금을 실었던 배를 타고 그대로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다. 재산 전부를 일본인에게 잃어버린 김두원은 울릉도에 홀로 남겨져 어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울릉도에서 반년 동안 있다가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한성으로 가서 訴狀을 올려 일본인에게 소금 값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기무라 형제가 김두원에게 울릉도에 가서 소금을 콩으로 바꾸라고 권유한 것이 소금을 탈취할 목적으로 유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하지만 그 후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무라의 동생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탈취한 셈이 되어버렸다.

## 2. 영사재판권과 呈訴활동

김두원 사건의 기본 성격은 일본인 상인이 울릉도에서 대한제국 상인을 상대로 물품을 갈취한 것이다. 그가 소장에서 요구한 요지는 外部에서 일본 공판에 조회하여 즉시 피고 측을 붙잡아 와서 소금 本價와 이자를 신속하게 推給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기무라 형제 선박회사의 선박에 소금을 실었다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올리기도 하였다.

당시 일본인과 관련된 사건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막론하고 피고가 일본인일 경우, 한국인은 法部에서 外部를 거쳐 해당 일본 공사관에 조회하고, 일본 공

사관의 회답이 있는 경우에 피고 일본인은 일본 공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측의 성의가 없이는 김두원의 억울한 사건뿐만 아니라 『외부소장』에 수록된 수많은 내국인들의 소송이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수많은 소장들에 대해 대개가 ‘알았으니 물러가서 기다리라든지’, ‘지금 심리 중이니 기다리라’, ‘더 이상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지 마라’ 등 아무런 대책 없이 일시적 회피에 급급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대한제국정부가 이러한 처분을 내리게 된 근본적 원인은 1876년에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있었다. 불평등조약은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통상장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약은 체결 과정부터 일본의 무력 하에 진행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영사재판권과 통상장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사재판권은 다른 불평등조항들과 함께 1876년 2월 3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에 포함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9관과 제10관에 담겨 있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상하였다. 피차의 백성은 각자 임의로 무역한다.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이를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만일 양국 상인이 속여 팔거나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양국 관리는 엄중히 해당 상인을 조사하여 부채를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는 대신 상환할 수 없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물던 중 만일 죄를 짓고 한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審斷한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 관원이 조사 판결할 것이다. 단, 쌍방이 각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재판하되,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극력 공평하고 정당하게 재판을 할 것이다.<sup>6)</sup>

6) 『고종실록』 고종 13년(1876년) 2월 3일(을축) 기사내용(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검색을 이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전자정보 주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또

제9관과 제10관은 모두 피고인이 속한 국가의 관원이 재판하는 피고인 관찰 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영사재판권은 조선국민이나 외국인이거나 모두 자국의 관원에게 재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는 호혜 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조선의 사법권을 침탈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일본의 의도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sup>7)</sup>

김두원 사건과 관련해서 볼 때 제9관의 내용 중에는 양국 상인이 속이거나 빚을 상환하지 않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양국 관리는 해당 상민을 엄히 체포하여 負債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김두원이 피고 측의 여러 재산 상태와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기무라 형제와 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치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가난한 상황이라고만 간략하게 照覆함으로써 해당 자국민에게 상환 의무를 강제하여 부과하지 않았다.

상품대금과 관련한 소송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던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원산항 상민 김두원의 소금 값 추심 訴狀이다. 내외국인간의 債訟 또는 상품대금 추심 문제는 개항장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대한제국 상인과 일본 상인 사이에 그리고 특별히 개성의 蔘圃 대금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대외무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人蔘을 들 수 있다. 일본상인, 청국상인 등은 개성 蔘圃에 대해 빈번하게 침탈하였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상인은 勒採한 인삼대금을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치르는가 하면 지급하지도 않고 도주하여 영사재판권을 핑계로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렇다면 김두원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김두원은 한성에서 유리걸식하면서 원통한 마음을 품은 채 소금 값을 되찾을 방도를 강구하였다. 우선 그는 상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가는 울릉도 주민을 통해

한 『舊韓末條約彙纂』(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11면을 참조하여 번역하였다.

7) 권한용, 위의 글, 218~229면. 이영록은 위의 글(212면)에서 이 조규의 모호성과 남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기무라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 신용이 없음을 꾸짖고 소금 값을 되돌려 주기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4, 5차례 일본에 편지를 보내 이유를 따졌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김두원은 일본에 직접 가서 상환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가난하여 일본행 배삐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다.<sup>8)</sup>

김두원은 外部에 소장을 올리기 전에 먼저 東萊 監理署에 가서 소장을 올리는데, 동래 감리서는 절차에 따라 부산항 일본 영사관에 照會하였다. 김두원은 세월만 보내고 있을 수가 없어 일본국 공사관에도 呈訴하였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퇴짜를 맞았고, 오히려 원산항 일본국 영사에게 가서 呈訴하라고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공사관에서는 원산에 가서 소장을 내라는 공문에 날인조차도 해 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김두원이 1901년부터 1906년까지 外部에 올린 訴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발급일자	원고	접수처	題辭일자
1	1901년(광무5) 4월 15일	金斗源	外部	5월 11일
2	1901년(광무5) 8월 1일	金斗源	外部	同月 1일
3	1901년(광무5) 9월 9일	金斗源	外部	同月 9일
4	1901년(광무5) 9월	金斗源	外部	同月 23일
5	1901년(광무5) 10월 9일	金斗源	外部	同月 10일
6	1901년(광무5) 10월 15일	金斗源	外部	同月 23일
7	1901년(광무5) 10월 25일	金斗源	外部	同月 25일
8	1901년(광무5) 11월 5일	金斗源	外部	同月 12일
9	1901년(광무5) 11월 15일	金斗源	外部	12월 5일
10	1901년(광무5) 12월	金斗源	外部	同月 20일
11	1902년(광무6) 3월	金斗源	外部	同月 25일
12	1902년(광무6) 4월 15일	金斗源	外部	

8) 同年 秋에 島人이 有商販次로 往于日本故로 寄書責其無心호고 俾即還支鹽價이더니 頓無答覆호고 其後四五次寄書호야 詰其事由이오나 亦沒有如何面責故로 直欲躬往責償이오되 赤貧身勢로 苦難措辦船費호야 逗留棧邊이다가 不得已呈訴外部호야 …… (1906년(광무 10) 10월 訴狀; 『外部訴狀』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년 영인본, 678면)



13	1902년(광무6) 4월 30일	金斗源	外部	5월 1일
14	1902년(광무6) 5월 25일	金斗源	外部	同月 27일
15	1902년(광무6) 6월 10일	金斗源	外部	同月 24일
16	1902년(광무6) 6월 25일	金斗源	外部	同月 28일
17	1902년(광무6) 7월 1일	金斗源	外部	同月 9일
18	1902년(광무6) 10월	金斗源	外部	同月 24일
19	1902년(광무6) 11월	金斗源	外部	同月 11일
20	1902년(광무6) 11월	金斗源	外部	同月 15일
21	1902년(광무6) 12월	金斗源	外部	同月 31일
22	1903년(광무7) 1월	金斗源	外部	同月 26일
23	1903년(광무7) 2월	金斗源	外部	同月 14일
24	1906년(광무10) 7월	金斗源	議政府	
25	1906년(광무10) 9월	金斗源	議政府	同月 15일
26	1906년(광무10) 10월	金斗源	議政府	11월 30일

위의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01년(광무 5)부터 1902년(광무 6)까지 김두원은 거의 매달 두 번씩 外部에 소장을 올렸다. 외부에서 내린 대부분의 指令 내용은 그의 딱한 사정은 잘 알겠지만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는 것은 아무런 보탬이 없으니 물러나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외부 입장에서 보면, 공문을 보내 일본 측의 회답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한편 1906년 이후 접수기관이 외부에서 의정부로 바뀐 이유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강제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外部 소관 업무가 議政府 外事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김두원은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소장을 올려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1901년 10월 15일에 기무라의 妻 옥간사가 그 동생 삼형제와 사촌 마사키(正木)를 울릉도에 代理를 보내 외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배계주에게 들었다. 그들은 배계주에게 지폐 70圓, 울릉도 주민 黃應九에게는 외상으로 빌려주었던 콩 300두를 거두었으며, 庫房과 從船(큰 배에 딸린 작은 배) 1척을 本浦 頭領에게 매매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家庄과 회사 선박이 시마네현 오키노쿠니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측은 울릉도에 가서 돈과 물품을 추심

해 가는데 김두원 자신의 전 재산인 소금 값을 받아낼 방도가 없다고 한탄하였다.<sup>9)</sup> 김두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울릉도에 있는 배계주가 上京 했으니 이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면 자연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김두원의 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울릉도에 가서 직접 추심하라고 무책임한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에 대해 울릉도로 추심하러 가는 것은 ‘島鬼’가 될 것이라며 거부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대한제국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면, 1901년 6월 4일에 외부대신 朴齊純이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김두원의 소금 값 및 손해의 索還과 범인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1901년 8월 7일 일본공사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회답하겠다는 내용으로 照覆하였다.<sup>10)</sup> 1901년 11월 15일 김두원이 외부에 올린 소장의 내용을 보면, 서기관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郎)가 기무라의 가족이 미상이라고 변명하자 김두원은 목을 매 자결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본 공사관에서는 범죄행위라고 칭하고 南署에 4일 동안 가두었다가 석방하기도 하였다.<sup>11)</sup> 1902년 7월에 怪疾이 심하게 일어나 자결하려다가 실패하여 亞房(관아에서 달린 使승이 있던 방)에 붙잡혀 갇히기도 하였다. 그 후 警務廳로 이송되었다가 8월 23일 순검들에게 이끌려 한성 밖으로 쫓겨 나갔다. 1902년 11월에는 訴狀이 通商局에 5개월 동안 유치되었다가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퇴각 당했고, 그는 公法을 살피지 않고 幇증을 채집하지 않으며 그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였다.

9) 1901년(광무 5) 10월 15일, 25일(『外部訴狀』, 363, 365면)

10) 『고종시대사』 5집 (원출전 『舊韓國外交文書』 第5卷 日案 6367號 光武 5年 8月 1日, 6384號 光武 5年 8月 7日. 『交涉局日記』 光武 5年 8월 1일 7일) 위의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자료(<http://db.history.go.kr>)에서 획득하였다. 이하 『각사등록』, 신문 기사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자료에서 검색정보를 이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1) 國分書記官이云曰 木村家族은 未詳이라 推托한후 原告가 驀發敢死之心호야 捐軀結項이온즉 日公館에서 稱以冒犯호고 使囚于南署四日에 幸得蒙放호은니 …… (1901년(광무 5) 11월 15일. 『外部訴狀』, 372면)

1902년 4월 30일 김두원은 외부에 제출한 訴狀에서 자신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만 엄연한 대한의 국민이며, 자신의 자본은 사소한 재산이지만 각국 통상규칙에 관계된다고 말하면서 만약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수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두원은 투옥을 각오로 이 일을 각국 공관에 돌아다니며 알리겠다고 강변하며 피고의 대리자인 사촌동생 마사키를 엄히 조사하여 소금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sup>12)</sup>

국내외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김두원의 訴狀 접수기관 역시 바뀌게 되었다. 1906년(광무 10) 7월 의정부 참정대신에 올린 소장에서는 外部가 폐지되고 일본공사관이 철거되었으므로 통감부에 교섭하여 소금 값과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906년(광무10) 9월 의정부에 올린 소장에서도 통감부에 공문을 보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조선정부는 김두원의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대일의교에서 별다른 조치 수단이 없었다. 한성에서 그는 수년 동안 呈訴 활동을 하는 동안 妻子가 죽고, 일가친척이 죽는 등 집안의 형편은 최악으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등 인간적 고뇌를 감내할 수 밖에 없었다.<sup>13)</sup> 1909년 10월 29일 수년동안 경성에서 체류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던 김두원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李熙直이라는 사람이 金貨 10圓을 의연금으로 내기도 하였다.<sup>14)</sup>

김두원은 본 사건이 개인 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난 1902년(광무 6) 충청남도 洪州郡 長古島에서 일본 선박이 암초에 부서지자 암초의 주인은 바로 조선정부

- 
- 12) 原告雖是至殘之遐蹤이나 頂踵毛髮이 係是大韓之微渺오 資本이 雖是略少之物貨오나 利害毫髮이 亦係各國之通規而當捧之物로 見失於外國人者가 豈特原告之抑鬱이리오 亦關全局(國)之羞恥而以此一事로 不得處辦於本部호야 竟至各公館巡訴之境이면 原告之罪난 去益貫盈이오 隣國之笑는 去益見侮이온바 原告는 捉囚於本部호고 照會於日館호야 該島에 代理호난 其從弟正木을 捉來嚴查에 該錢을 督捧호오되 若使正木으로 替懲此款이라도 源一郎之本物執推는 元是此人이오니 豈可曰白懲乎잇가 (1902년(광무 6) 4월 30일. 위의 책, 403~404면)
- 13) 向伏見家信則飢妻弱息이 并當慘憾호고 侄兒男妹도 亦隨以逝호니 一門之內에 凶變이 極矣오 九旬老母는 依托無處호니 念此情境에 痛入骨髓라 (1902년(광무 6) 10월. 위의 책, 440면)
- 14) 『대한매일신보 발췌록』(靑丘大學出版部, 1958), 173면.

라고 주장하면서 선박 값 3천원을 해당 주민에게 징수를 독촉하여 하는 수 없이 조선정부에서 변상한 일도 있었고, 1904년(광무 8) 公州郡에서는 일본인 상민 히로타츠 다로(寛辰太郎, 토모타츠 다로)가 조선 軍人과 싸운 일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금 몇 천원을 조선 정부에서 변상한 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갑오·을미년 이후 內地에서 人命損害라고 칭하고서 그 유족에게 恤金이라는 명목으로 수 십 만원을 징수해 갔다고 말하면서 이는 모두 일본 정부가 앞서 행한 法律證援의 한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그럼 일본 정부의 조치와 김두원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 공사관 서기관 고쿠분(國分)이 外部를 방문할 적에 이 사건에 해결해 달라고 김두원이 하소연하였다. 이 때 고쿠분은 그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 지폐 20圓을 주었지만 단호히 거절하였다. 고쿠분은 기무라가 죽었으니 소금 값을 捧受할 수 없다고 변호하자 이 말을 들은 김두원은 형제 회사에 형이 죽었더라도 동생이 살아있고, 또 동생이 소금 실은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갔으니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다.<sup>15)</sup> 서기관 고쿠분과 두 세 차례 담판하자 처음에는 소금 값과 손해금액을 당연히 徵給할 것이니 며칠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그는 불과 몇 개월 만에 駐美 參書官으로 발령을 받아 미국으로 부임해 갔다. 훗날 고쿠분이 통감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돌아오자 김두원은 계속 呈訴하였지만 그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두원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통감부가 일본 상인을 편애하고 한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일제의 조선 통치정책까지 서슴지 않고 발언하였다.<sup>16)</sup>

또한 김두원은 원고 기무라가 울릉도에서 피살되었기 때문에 그 상속인 킨

15) 1901년(광무 5) 10월 9일(『外部訴狀』, 356~357면)

16) 生이 直接往見日公館書記官國分象太郎氏하고 再三談辦이은 則象太郎氏言內에 鹽價與損害賠償金은 當然徵給호터이오니 幾日間姑俟호라호더니 不過幾月에 以駐美參書官으로 前往호 았다가 近日方在統監府官員이은되 生이 三呈訴狀호야도 視若不見호고 聽若無聞호여 無如何之發落이오니 未知中間沈滯而然歟은지 統監府가 偏愛日本之商民호고 不恤韓民之冤屈而然歟잇가 (1906년(광무 10) 9월. 위의 책, 678면)

노스케(金之助)와 당시 동행하였던 동생 오츠키치(乙吉) 등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요구하였다. 일본정부의 견해로는 배상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무라의 친척이나 상속인 킨노스케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니 당장 입에 풀칠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공사가 照覆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恤金(위로금)으로 만족하거나 일본으로 건너가서 提訴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일본 측에서는 김두원 사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김두원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20여 년 동안 계속 조선과 일본 당국자에게 소장을 접수시키는 험겨운 소송 싸움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주장하는 김두원에 대해 동정여론이 일어나자 계속적으로 약간의 恤金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였다. 일본 공사관은 대한제국의 외부 회계국에 留置하고 김두원에게 받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김두원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生이 拒絶不從曰 吾雖貧窮濱死이나 恤金名色은 雖幾萬圓이라도 決不當受去요<sup>17)</sup>

김두원은 일본 공사가 지급하려는 恤金은 결국 朝四暮三의 술수라고 폄하하였다.<sup>18)</sup> 하지만 조선정부는 일본의 恤金 지폐 170圓을 먼저 수령하고 울릉도에 가서 추심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김두원은 울릉도에 추심하는 것은 ‘島鬼’가 될 뿐이라고 거부하였다.

1903년 5월 27일(음력) 김두원이 黃土峴 路上에 가다가 外部에서 나오던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만나자 여러 가지 일을 꾸짖으며 일본정부가 공사를 파견한 이유는 이웃나라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정짓지 못함을 호통 쳤다. 김두원의 고성에

17) 위의 책, 678면.

18) 且所謂日使之恤金은 卽朝四暮三之術也 (1902년(광무 6) 10월. 위의 책, 440면)

일본공사가 인력거 위에서의 놀라 겁이 나서 넘어졌다가 외부로 다시 들어갔고 김두원은 현장에서 잡혔다.<sup>19)</sup>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일본 공사에게 횡포를 부린 처벌을 두고 外部, 法部, 裁判所간에 왕복한 문서에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03년 6월 22일 외부에서 일본 공사에게 횡포를 부린 김두원의 處置件으로 법부에 조회하였다.<sup>20)</sup> 법부대신 李載克이 외부대신 이도재에게 보낸 照會에는 피고 김두원을 『大明律』 「鬪毆」 毆制使及本管長官條<sup>21)</sup>를 적용하여笞 100대, 징역 3년에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가 소금 값을 추심하는 일로 外部와 일본공사관에 누차 소장을 올렸고 전후 소장을 몸에 늘 지니고 일본 공사를 길가에서 만나면 그때마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였다가 마침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김두원의 사정을 옹호하였다. 그 후 김두원은 일본공사 폭행 사건으로 감옥에 갇힌 지 1년 만에 사면되었다.

이전에도 일본공사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김두원의 처벌을 외부대신서리 의부협판 崔榮夏는 警務使에 요청하였다.<sup>22)</sup>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도 김두원은 1903년 2월 어느 신문 기사 내용에서 일본 상선이 파선되자 조선 정부가 암석의 주인이라고 배상금을 물린 일본공사나 서기관 중 한 놈을 큰 길에

19) 『각사등록』 근대편, 『司法稟報(乙)』 報告書 第四十一號(1903년 8월 19일 한성부재판소 首班 判事 閔景植이 법부대신 李載克에게 보낸 보고서)

20) 德源民金斗源이 本日本에 在本部門前하야 日本公使에게 肆然犯手하오니 全國體面이 虧損無餘하온지라 論其罪犯하오면 在法罔赦요 若或輕勘放送하오면 恐復有作梗之慮하오니 不得不處以重律하야 以杜後患이오며 該犯은 業已押交警務廳이옵기 茲에 照會하오니 查照하오서 轉飾裁判所하시와 卽行審辦하시고 處於何律을 無滯示明하심을 爲要 (『각사등록』 근대편, 『法部來案』 照會 第五號, 외부대신 李道宰가 법부대신 李載克에게 보낸 조회)

21) 『大明律直解』 卷第二十 「刑律」 「鬪毆」 毆制使及本管長官條(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년 영인본, 460면)에는 杖一百 徒三年으로 규정되어 있다.

22) 元山居民 金斗源이 日人과 訴訟이 有하야 日本公使가 恤金一百五十元을 給與하되 終未快意이다하야 本部에 課日來關하야 語不擇發하오니 民習이 可駭뵈더러 日本公使行車에 犯手하야 幸免困辱이오나 一箇人民이 外國使臣에게 無難侵逼하오니 有損事體이온지라 此若仍置하오면 又恐有意外之慮이기로 該民을 押交하오옵고 茲에 照會하오니 查照하오서 飭卽越鏡케 하심을 爲要 (『각사등록』 근대편, 『警務廳來去文 1』 照會 第十五號, 外部大臣署理 外部協辦 崔榮夏이 警務使 李鳳儀에게 보낸 조회)

서 만나면 범죄를 저지르고 죽겠다고 극언하였다.<sup>23)</sup> 1903년 3월 일본공사에게 무례한 행위를 한 김두원을 일본공사는 外部에 照會하여 처벌을 요구하였다. 외부대신은 일본공사에 대한 그의 행위를 사과하고 그를 警務署로 押交하였음을 照覆하였다. 또다시 3월 13일 김두원이 소금 값을 償還해 주도록 요구하자 일본공사는 해당 요구에 대해 예전과 같이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고 恤金이나 받아가라고 회답하여 왔다.

1905년 11월 17일 서울주재 하야시 곤스케 공사와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제순 사이에 일명 ‘한일협약(을사강제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3월 경성에 도착하였는데, 김두원은 같은 해 4월 24일 이토 히로부미에게 소금값 청구서를 보내기도 하였다.<sup>24)</sup> 이틀 전인 4월 22일에는 정부의 친일 외교고문관이었던 미국인 須知分氏(스티븐스, Durham White Stevens)에게 소금값 추심에 관한 일로 呈書하였다.<sup>25)</sup> 조선총독부 설립 이후 그의 계속된 정소활동에 대해 보안과장이 김두원을 호출하여 수년 동안 呈訴한 것은 치안방해라고 함에 따라 그는 경무총감부 司法係에 갇혀서 반년 선고를 받았다. 그 후 6개월 후에 다시 兪南 於靑島<sup>26)</sup>에 유배되어 1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였다. 김두원의 冤抑 사건은 개인 소송에서 시작하였지만, 日帝의 입장에서 점차 반사회적 행위로 비추어지고 있었다.

23) ‘大韓岩石에 日人風船이 觸破船호였다 稱호고 賠償金을 물여간 挾雜호눔 日公使 林權助와 書記鹽川이과 두놈 중에 어니놈이 읍던지 何日에 大道上 飄쳐노코 死生을 안니난섬 約定될 터이오니 犯罪호고 죽을줄 엇지아올릿가’

24) 『대한매일신보 발췌록』(靑丘大學出版部, 1958), 170면.

25) 위의 책, 169면.

26) 어청도는 현재 전북 군산시 고군산열도에 딸린 섬 63개 중 서해북단의 외딴 섬으로, 구한말에 兪南 보령군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북 군산시 옥구면에 편입되었다.

### 3. 국권회복의 상징

김두원은 기존 소송절차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呈訴활동을 계속 펼치는 한편, 사회적 反響을 목적으로 신문사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두원은 7, 8년이 지나는 사이 누차 각 신문에 실려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한·일 양국의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 될 뿐만 아니라 천하 列國이 모두 잘 아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7)</sup> 이는 김두원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여론 형성이 되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김두원의 정소활동을 여러 번 거론하였는데, 직접 일본 정부에까지 이 사건의 전말을 호소하여 일부 일본 정치인과 신문에서 호응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황현은 1908년(융희 2)에 원산의 소금장수 김두원이 內閣에 벌써 10번째 호소하고 있으며, 1909년(융희 3) 12월 1일에도 김두원이 여러 번 일본 내각총리대신 가쓰라(桂太郎)에게 長書を 보내자 前議長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明)와 하세바 스미타카(長谷場純孝) 등이 소금 값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sup>28)</sup> 그리고 1910년(융희 4) 3월 7일 김두원이 다시 鳴冤書 4부를 작성하여 가쓰라,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 하세바 스미타카 및 東京에 있는 滑稽社로 보냈는데, 이때 끝계사는 논평을 통해 김두원을 두둔하면서 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관리들을 비판하였는데 우리나라 신문도 끝계사의 正論을 게재하였다.<sup>29)</sup> 또한 일본 내각 가쓰라에게 보낸 鳴冤書는 1909

27) 故로 抱狀號訴가 已闕七八星霜이온지라 由是로 其事狀顛末이 屢登於各新報호고 傳播於一世人호야 塗人耳目호며 膾炙萬口호오니 非但日韓兩國人習知라 抑天下列國人所共傳聞者也니 其事情之至冤極痛은 孰有不諒哉아 (『각사등록』 근대편, 『請願書』 訴告書 1907년 6월 9일 김두원이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보낸 訴告書)

28) 元山鹽商金斗源 作長書數度 送獻于日本總相桂太郎 前議長山縣有朋及長谷場純孝等 督還鹽價(『梅泉野錄』 제6권, 융희 3년(기유) 양력 12월 1일 기사)

29) 隆熙四年庚戌 元山鹽商金斗源 更作鳴冤書四度 付于桂太郎曾彌荒助長谷場純孝及東京滑稽社 社論皆右斗源 唾罵其官吏之在韓者 報館揭以滑稽正論(위의 책, 제6권, 융희 4년(경술) 양력 3월 7일 기사)



년 8월 29일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는데 10여 년 동안 10배로, 5만여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1910년에도 김두원은 다시 일본 정부에 鳴冤書를 발송하였다.

그는 국내 신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鳴冤書를 보여주는 등 활동을 개시하였다. 김두원은 고위 관리에게 매달 鳴冤書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나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자 질타하였다. 김두원은 參政大臣 朴齊純과 外事局長 韓昌洙를 광화문 앞에서 만나자 일본 헌병과 순사의 호위를 받으며 기생과 풍악을 즐기고 노닐면서 무능력하게 자리만 채우고 높은 월급만 받는다고 고위관리를 엄중히 꾸짖었다. 人民의 생명과 재산은 보호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고 경회루 연꽃 연못이나 각 山寺나 江亭에서 풍악이나 즐기며 허송 세월하고 공연히 봉급만 낭비하느냐고 격분하였다. 국권을 상실하고도 자리에만 보전하는 데에 급급한 조선의 고위관리의 후안무치를 조롱한 것이다.<sup>30)</sup>

1920년 4월 29일 『독립신문』에는 「獨立公債募集」의 기사제목에서 조선의 독립과 개인의 생존을 위해 광복사업에 필요한 公債에 應募하라고 선전하면서 김두원이 소금 값을 백주 대낮에 탈취당하고도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없었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국권이 약한 백성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다는 증거로 김두원을 거론한 것이다. 결국 김두원의 狀書 운동은 이 시기 국권 회복의 표상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 1920년 5월 17일 「余는 鹽商金斗源」이라는 큰 제목 아래 ‘소금장사 김두원이라 하면 지금 삼십세 가량 만(滿)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만한 유명한 소금장사이다’라고 시작하여 사건의 전개와 그의 呈訴활동 및 주장의

30) 日前金氏가 光化門前에서 參政大臣朴齊純과 外事局長韓昌洙를 逢着하여 勵聲大叱曰 現今城內에 豹虎가 無하거늘 何故로 擔銃兵과 日憲兵日巡查를 前後擁衛하느뇨 身爲參政하여 人民生命財産은 保護할 念이 豪無하고 但慶會樓蓮池上和 各山寺江亭에서 妓生豐樂으로 消暢度日하고 空然幾百元月俸만로 浪費하느냐 余가 決코空死치않고 政府上無恥鄙夫輩를 結果하고 乃死하리라... (『대한매일신보 발췌록』, 靑丘大學出版部, 1958, 171면)

31)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獨立公債募集 (원출전; 『독립신문』 대한민국 2년(1920) 4월 29일 1면 기사)

요지를 상세히 실었다.<sup>32)</sup> 그리고 『동아일보』 1920년 5월 27일 당시 71세의 김두원이 일본내각 총리대신, 외무대신, 내무대신, 衆議院長, 樞密院議長, 조선총독 앞으로 제출한 鳴冤書 全文을 실고, 그 후록을 다시 보도하였다.

또한 1920년 12월 27일 「讀金斗源上書有感」이라는 논제에서 記者는 김두원의 百折不屈의 의지를 극찬하면서 만일 우리나라 상하 국민이 모두 김두원과 같은 血性이 있다면 어찌 외국인에게 멸시를 당하여 國權을 상실할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김두원을 ‘참다운 奇男子’라고 극찬하였다.<sup>33)</sup> 김두원이 언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두원이 어느 날 漢城新聞社에 가서 광고하도록 말하였더니, 8월 30일 신문에 주소지, 성명, 본 사건의 顛末을 拔去해 버리고 쓸데없는 말만 기록하며 일본국에 광고하지 않았다고 힘없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仁川 鎭南浦 群山 三港口에 電報로 時勢를 分問할터이오니 下鑑하옵서 專賣特許者 金斗源이라 하옵시면 其間營業도 興旺하려니와 二十年間 前後損害 與否없이 平生恨을 풀터이옵고……<sup>34)</sup>

그는 위의 내용을 일본내각과 조선총독부에 올렸다. 나아가 電報로 인천·진남포·군산 세 곳 항구의 소금 전매특허영업권을 인정해 주면 20여 년간의 전후 손해배상 여부없이 평생 통한이 풀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두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투쟁의지가 꺾인 것으로 볼 것인가는 좀 더 논구해야 할 것이다. 김두원이 자신의 소금 값을 되찾으려고 시작한 呈訴 활동에서 결국 당시 배타적인 일본정부와 힘없는 식민지의 한 개인이라는 구도로부터 점차 한계를 느끼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소치일 것이다.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신문자료DB, 『동아일보』 1920년 5월 17일 기사내용

33) 嗚呼壯哉 使我國民上下 皆如金斗源之血性 豈有受侮外人而自失國權之理哉 嗚呼 金斗源 眞奇男子也 恨不人人具有 金斗源之血性也 (『爛報抄錄』 坤,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DB자료)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신문자료DB, 1920년 5월 27일 기사내용.

### Ⅲ. 맺음말

김두원의 硃訴활동이 당초 日帝에 대한 민족항거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 양국의 개인 간에 발생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점차 대한제국의 외교능력의 부재, 일제의 호혜 원칙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제국정부 고위 관리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일본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일감정을 硃狀의 文面에서 드러내고 있다. 무명의 소금장수가 20여 년 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받기 위해 투쟁한 사실은 개인의 권익 활동을 넘어서 저항의식까지 보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899년 시점에서 1903년까지 外部에 올린 硃狀이 수십 건이고, 일본 공사관에 보낸 소장이 또한 30여 건이며, 外部에서 일본 공사관에 移照한 것이 10여 차례였다. 일본 공사관은 해당 일본인이 재산이 없어 推給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sup>35)</sup> 김두원을 비롯하여 당시 외국인과의 분쟁으로 인한 정소활동의 의미는 역사 전개 속에서 영사재판권 아래의 약소국 상인의 문제점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는 外國 정부를 상대로 불평등과 제도적 절차의 하자를 제기하는 힘든 과정에서 타협을 원치 않고 곳곳하게 자신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국제공법과 영사재판권의 실체를 인식해가면서 판례까지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김두원은 소장의 내용 중간에 ‘萬國公法’, ‘交隣之誼’, ‘各國通商規則’, ‘開化世界’, ‘文明國’ 등을 자주 거론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는 줄기차게 硃訴활동을 펼치면서 불평등한 한일관계와 약소국 국민의 처지를 자각하였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한편,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의식을 결속하고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상징이

35) 三年內 呈訴外部가 不知幾十次요 又呈日館이 亦至三十次矣요 自外部로 移照日館이 亦爲十餘次로되 該館照覆즉 只是兩次 而其辭意즉 與被告所告로 雖無差爽이나 只以該日人의 蕩產無財하야 莫可推給으로 爲托云矣러니(광무7년(1903) 8월 28일, 『法部來案』(奎 17762))

되기까지 한다. 100여 년이 지난 김두원 사건이 오늘날까지 그 의미의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본 사건이 제기한 문제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발췌록』, 靑丘大學出版部, 1958.

『舊韓末條約彙纂』,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

『外部歸附狀』규장각자료총서 訴訟案篇,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영인).

『大明律直解』규장각자료총서 法典篇,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영인).

(역주)『梅泉野錄』, 서남 동양학자료총서, 임형택 등 옮김, 2005.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이야기』, 살림, 200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자료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자료 <http://db.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 아카이브 DB자료 <http://yoksa.aks.ac.kr/>

이광순, 「韓日合併 前後를 통한 日人들의 侵略行態—鹽商 金斗源에 對한 木村乙吉 等の 海賊行爲를 中心으로」, 『韓國思想』 제4집, 韓國思想編輯委員會, 1962.

이병천, 「한국 개항기의 사회경제구조와 그 변화 : 개항기 외국상인의 내지상권 침입—청상(淸商)·일상(日商)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제9호, 경제사학회, 1985.

권한용, 「日帝식민통치기 초기 朝鮮에 있어서의 不平等條約의 國際法의 效力」, 『법사학연구』 제29호, 한국법사학회, 2004.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법사학연구』 제32호, 한국법사학회, 2005.

한철호,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 『한국사학보』 제21호, 고려사학회, 2005.

&lt;Abstract&gt;

## Litigation Struggle of Kim Du-won(金斗源), a Salt Merchant in the Latter Era of Joseon(朝鮮) and Consular jurisdiction

Kim, Kun-Woo\*

Kim Du-won(金斗源) had filed suits for more than 20 years that begins from a default of a Japanese in 1899. The case was originally a simple case between the individuals of Joseon(朝鮮) and Japan, but further on he raised the issue of the diplomatic incompetence of Daehan Empire and the unreality of reciprocity principle of Japanese Imperialism publically. Also, he had revealed the incompetence of Joseon's high ranking officials, the deceptive attitude of Japan and his anti-Japan emotion in his petitions. He was imprisoned for 6 months for the breach of public order and was exiled for a year for pushing the rickshaw of the Japanese governor. Kim Du-won case began as an individual case, but had been taken as an antisocial actio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Kim Du-won's litigation struggle characterized the real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merchants of a weak nation under an unequal treaty. He had done many efforts to recover his right and interests uncompromisingly by raising the problems of inequality and institutional defect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He had realized the unequal

---

\* Professor, Jeonju University School of Language and Cultur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sad position of the people of a weak nation. Known by press release, his struggle became a symbol of inspiration for an anti-Japan emotion.

**[Key Words]** Consular jurisdiction, Litigation, Salt Merchant, Default, legation

접수일 : 2011. 4. 1, 심사일 : 2011. 4. 5~4.12, 게재확정일 : 2011. 4.20